

관세청고시 제2023-54호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 일부개정

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(관세청 고시 제2023-46호, 2023.7.1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23년 9월 1일

관세청장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붙임

부칙 <관세청고시 제2023-54호(2023.9.1.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)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.

[별표]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

연번	고시번호(시행일)	품 명	비고
541	2023-54호('23.9.01)	Jet Projecting Machine	
542	2023-54호('23.9.01)	Dispersion Polymer(CDP)	
543	2023-54호('23.9.01)	Salt water; MODOPS 물죽염	
544	2023-54호('23.9.01)	Peanut preparations; Peanut bars	
545	2023-54호('23.9.01)	DN8 FRT DR STEP LH	
546	2023-54호('23.9.01)	Frozen Patella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(폐지)	

## 541. Jet Projecting Machine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3-54 (2023.9.1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전 공문
1	Jet Projecting Machine ; Ultrahigh-Pressure Pump	분류47281-741 (1996.12.18)

### ○ 물품설명

- 고압펌프를 이용해 강한 수압으로 녹이나 페인트의 잔여물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워터제트 분사기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8424.30-9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8424.89-900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수압을 이용한 워터제트 분사기는 증기(기체)나 모래(연마재 등) 분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없어 제8424.89-9000호의 “그 밖의 분사기”로 분류(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42. Dispersion Polymer(CDP)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3-54 (2023.9.1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Acrylamide copolymer ; Dispersion Polymer(CDP), SL-800	품목분류2과-7836 (2013.10.18.)

### ○ 물품설명

- 폐수처리 고분자 응집제 등으로 사용되는 유백색 에멀션(emulsion) 상태의 Acrylamide-Benzyl chloride ammonium acrylate copolymer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3906.90-9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3906.90-100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단일 중합체부터 아크릴아미드 기체의 공중합체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어 응집제, 지력증강제, 접착제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폴리아크릴아미드의 일종이므로 제3906.90-1000호로 분류(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포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43. Salt water; MODOPS 물죽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3-54 (2023.9.1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Salt water; MODOPS 물죽염	품목분류2과-4378 (2013.6.21.)

### ○ 물품설명

- 정제수(77%)에 죽염(23%)을 녹여 희석한 액체 상태의 식염으로 조리시 첨가하여 사용(내용량 330ml)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### 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2501.00-9010호

### 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2501.00-909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건조나 탈수, 태움, 재결정 등의 공정을 거친 분말이나 결정체 형태의 식염이 아니므로 제2501.00-9090호의 '기타의 것'으로 분류(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44. Peanut bar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3-54 (2023.9.1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전 공문
1	Peanut preparations; Peanut bars	분석47260-462 (2002.8.12.)

### ○ 물품설명

- 혼합한 땅콩(53%)과 참깨(7%)에 설탕, 꿀, 시럽 등을 버무려 특정 형상으로 조제한 식품류(내용량 55g)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### 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2008.11-9000호

### 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2008.19-900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혼합한 땅콩과 참깨에 설탕이나 꿀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식품이므로 제2008.19-9000호의 '기타(혼합물을 포함한다)의 것'으로 분류 (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45. DN8 FRT DR STEP L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3-54 (2023.9.1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DN8 FRT DR STEP LH; 85875-L1500	품목분류1과-5228 (2019.12.18)

### ○ 물품설명

- 차량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안쪽 스텝(스커프) 부분에 덧대어 지는 철강 재질의 판으로 특정 상품명이 영문으로 각인되어 있음  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8302.30-0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8310.00-000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금속판에 특정 차량명(상품명)이 새겨진 명판(name plate)의 일종이므로 제8310.00-0000호로 분류(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포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46. Frozen Patella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(폐지)

제2023-54 (2023.9.1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전 공문
1	Edible beef bone with meat,frozen;;;For food;Beef bone 72%,meat 28%;U.S.A	분석47260-1661 (2000.11.29)
2	Edible beef bone with meat,frozen;;;For food;Beef bone 80%,meat 20%;U.S.A	분석47260-1660 (2000.11.29)
3	Edible beef bone with meat;;Frozen;For food;Beef bone 90%,meat 10%;U.S.A	분석47260-1325 (2000.09.25)
4	Edible beef bone with meat,frozen	분석47260-1063 (2000.08.03)
5	Edible beef bone with meat, frozen	분석47260-894 (2000.07.03)
6	Edible beef bone with meat, frozen	분석47260-438 (2000.04.04)
7	Patella, frozen	분석47260-510 (2000.04.19)
8	Knee sinew, frozen	분석47260-698 (1999.06.30)

### ○ 물품설명

- 육수용(식용)으로 사용되어지는 뼈째 절단한 소의 뒷다리나 무릎뼈, 도가니·사골부분 등으로 뼈에 육(肉) 등이 붙어있음 (냉동상태)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0202.20-0000호, 제0206.29-9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삭제

### ○ 삭제사유

- 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발뒤꿈치(hock)와 뒷발목뼈가 포함된 상태로 소의 뒷다리 하퇴골 하단부를 뼈째 절단한 물품에 대해 제0202.20-9000호의 '절단한 그 밖의 냉동 소고기'로 분류하였으나, 상기 물품의 경우 명확한 절단부위 등이 확인되지 않아 혼란방지를 위해 해당 결정내용을 삭제하고자 함